

한농연의 협동조합 개혁 운동 방안

〈한농연 회원농축협 개혁 운동 전개 방침〉

○ 조합원 주권회복 선포식

- 개최주체 : 도 연합회
- 집중기간 (6월 24일~6월 30일)
- 읍면단위 지도자 이상 집회 개최

○ 조합원 주권회복 운동 전개

- 주체 : 읍·면회, 시군연합회
- 시군연합회별 핵심문제조합 1조합 선정
- 집중기간 (7월 10일~7월 20일)
- 회원조합 주요 개혁과제 관찰

○ 우리 농협 현황 조사 사업 추진

- 주체 : 읍·면회, 시군연합회
- 시군회장 : 관내 지역축협 및 전문농협(원예농협, 채소농협 등)에 대해 조사
- 읍면동회장 : 읍면동 관내 지역농협에 대해 조사
- 집중기간 (6월 24일~7월 10일)
- 7월 10일까지 조사 실시 후, 조사 결과를 중앙연합회에 우편 및 팩스로 전달
- 중앙연합회는 7월중 조사 결과를 분석·정리하여 도 연합회를 통해 결과를 통보할 방침

회원농축협 개혁 운동 방안



미 한농연중앙연합회는 4월말의 시군회장 교육과 농협개혁 자료집을 통해 회원농축협의 개혁을 위한 실행 방법을 상세하게 소개한 바 있다. 한농연은 “중앙연합회 - 도 연합회 - 시군연합회 - 읍면동회”로 이어지는 내부 조직의 특성을 살려, 명확한 역할 분담에 의한 실행 체제를 갖추어 추진해 나갈 것이다.

한농연은 오는 6월 24일부터 7월 20일까지 회원농축협 개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특히 농민조합원들이 주인된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한농연은 지난 5월 25일의 제2기 통합 농협중

회원농축협 개혁 운동의 핵심은 무엇인가? 농민조합원들의 참여 의식과 역량을 높여 조합 내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고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는 데 있다.

회원농축협의 농민중심적·민주적 투명 경영과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꼭 필요

한 전제조건이다.

회원농축협 개혁의 핵심 세력으로서 농민조합원들의 중요성은, 작년말부터 금년초 까지 진행된 경북 지역 농협개혁 운동의 사례를 통해 잘 살펴볼 수 있었다

(월간 한농연 2004년 5월호 참조).

양회장 선거를 맞아 농축협 개혁을 위한 10대 요구사항을 발표하였으며, 이 중 회원농축협의 개혁을 위한 한농연의 주요 핵심 요구사항은 우측의 표와 같다.

농협법 개정 운동 방안

지난 5월 30일 제17대 국회 개원 이후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했던 농협법 개정 작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현재 여야 정당간 국회 원 구성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해당 법안을 심의·의결해야 할 상임위원회의 인적 구성 절차가 추진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작년 10월 4일 입법예고 이후 농림부와

회원농축협 개혁을 위한 한농연 핵심 요구사항

- 조합장 비상임 체제 전환
- 전·상무 연봉제 등 조합임직원 급여체계 개선
- 조합정보 공개(예·결산 상세부속서, 급여 등)
- 참여를 통한 경제사업 활성화 계기 마련
- 핵심 작목반 육성 계획 촉구
- 관내 핵심품목 판매계획 촉구
- 경제사업 직원 인센티브 및 직군별 채용, 승진
- 생산, 품질관리, 공동선별, 공동판매, 공동계산 등 조합의 역할 촉구
- 조합경영 개선을 통한 상호금융 대출금리 인하
- 지도금융 프로그램 도입 촉구

정부 입법예고안에 대한

농민단체들의

주요 관찰내용

- 농협중앙회장 비상임으로 전환
- 교육지원사업 전담 전무이사제를 도입
- 농협중앙회 대표이사에게 집행간부 임면권을 부여
- 농협중앙회 신용사업과 경제사업간 직원 인사교류를 금지
- 농협중앙회 내에 의결권을 갖는 소이사회를 도입
- 회원농축협들 사이에 결성된 사업연합체에 법인 자격을 부여
- 회원농축협의 총회소집청구권 등 조합원 권리 행사에 관련된 제한 완화
- 조합원에 대한 이용고 배당을 우선시하도록 배당제도 개선
- 농협중앙회나 회원농축협의 경제사업을 위해 출자하는 경우, 출자제한 규정을 완화 (현행 법령에는 동일 법인에 자기자본 비율을 20%로 제한하고 있음)

법제처 사이의 논의를 통해 수정한 농협법 개정안은 6월중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농민단체들로부터의 추가 의견 수렴과 국회 농해수위와 법사위 등에서의 논의 등 추진 절차가 매우 복잡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빨라야 금년 정기국회 시기부터 농협법 개정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 정부 발표와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된 농협법 입법예고안은, 그동안 한농연 등 농민단체들이 요구해 온 상당수 사안들이 관철된 것으로 평가된다. 농협중앙회장 비상임 전환, 법인체 자격의 사업연합체 도입 등이 좋은 예이다. 하지만, 중앙회 신경분리 시한이 명시되지 않고, 세부 개혁과제에 대해서는 아직 미흡한 요소가 많다는 평가도 많은 상황이다.

향후 농협법 개정 과정에서 제기될 핵심 사항

중 하나는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 문제이다. 한농연 및 농민단체들은 3년 이내에 현 농협중앙회 조직을 농협중앙회(교육·지도·감독 담당), 경제사업연합회, 신용사업연합회로 분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농협법 정부 입법안에 ‘농협중앙회는 1년 내에 신경분리 방안을 마련하여 전문가와 상의한 뒤 추진한다’는 내용이 삽입될 것으로 알려진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농협중앙회 신경분리는, 경제사업 활성화와 농민조합원 실익 증진이라는 대원칙 속에서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 내 일부 경제부처와 은행·금융업계의 입김 속에서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의 본질이 흐려질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수협중앙회

신경분리 이후

발생한 문제점

○ 어민과 회원조합에 대한 자금지원이 축소되었다. 2003년 말 현재 어민과 일선 수협에 대한 수협중앙회 자체자금인 금융자금 지원 실적이 18.9%나 감소하였다.

○ 수협중앙회의 경제사업 부문의 외부자금조달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경제사업 부문의 자금조달 및 운영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아울러 수협중앙회의 지도·경제사업에 대한 신용사업 지원 축소로 조합 및 중앙정부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수협중앙회의 지도사업비 지원 규모가 신경분리 이전에 비해 1/2나 감소하였다.

만약 농민조합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금융업계 내부의 주도권 다툼 속에서 농협중앙회 신경분리가 추진된다면, 취약한 농협의 경제·지도사업을 위한 신용사업 부문 잉여를 지원할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될 수 있는 우려가 높아진다. IMF 경제 위기 이후 각종 금융사고로 부실화되어 중앙회의 신경분리가 추진된 수협중앙회의 사례를 통해 이러한 위험성을 잘 살펴볼 수 있다(위표를 참조).

그러므로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의 전제조건을 확실히 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즉 신용사업에 대한 감독 기능은 기존과 같이 농림부가 담당하도록 하고, 신용사업 이익금을 경제사업 및 지도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입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중앙회 시군지부 폐지 문제도 마찬가지다. 시군지부 폐지와 동시에 시군 공금고를 회원농축협에 유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 작업과 함께 회원농축협들의 자본 확보 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너무 큰 상황임을 감안해야 한다. 그러므로 현행 시군지부의 공금고 운용 평균잔액(매년 약 14조 5천억원 수준)의 1%를 회원농축협 경제사업 활성화에 환원하는 등 가시적 대책 추진에도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농연은 농협법 개정 운동을 국회 및 정부의 법 개정 동향에 맞춰 점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회원농축협 개혁 운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한 이후, 한농연 회원 및 농민들의 향상된 힘을 바탕으로 농민중심적인 농협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다. ■■■